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 윤가은

서울특별시 가상구 예시로 00, 000동 000호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디지털몰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0)

서울특별시 가상구 가상로 00, 0층

대표자 대표이사 예시다은

청구 취지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음 각 기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 금 1,890,000원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독촉절차비용

금 68,580원(내역: 송달료 67,680원, 인지대 900원)

청 구 원 인

1. 온라인 주문과 결제

채권자는 개인용 노트북을 사기 위해 2026. 9. 28. 채무자의 자체 온라인몰에서 노트북 1대를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금 1,890,000원을 전액 결제하였습니다. 채무자는 같은 날 판매자, 상품, 가격과 철회 조건이 적힌 주문확인서 및 계약내용 서면을 교부하였습니다.

2. 수령과 기간 안의 청약철회

상품은 2026. 10. 2. 배달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제조사 봉인을 뜯거나 전원을 켜지 않고 10월 5일 쇼핑몰 문의와 전자우편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채무자는 10월 6일 이를 접수하고 반송지를 안내하였습니다.

3. 반송과 전액 환불 확인

채권자는 반송비 금 6,000원을 운송사에 직접 내고 2026. 10. 6. 상품과 구성품 전부를 추적 가능한 택배로 반송하였습니다. 채무자는 10월 8일 이를 받은 뒤 10월 12일 일련번호, 제조사 봉인, 구성품과 미사용 상태를 확인하고 공제 없는 금 1,890,000원 전액을 10월 14일까지 환불하겠다고 서면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환불기한 경과와 미지급

채무자는 확인한 기한까지 카드 취소나 계좌 환불을 하지 않았고 2026. 10. 19. 현재 환불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환불금 원금,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지급을 구하며 별도 전자상거래법상 지연배상금은 구하지 않습니다.

첨 부 서 류

1. 온라인 주문내역, 상품페이지, 판매자 정보 및 계약내용 서면 1통
2. 신용카드 승인내역, 주문확인서 및 최초 배송 운송장 1통
3. 개봉 전 사진, 영상, 상품 일련번호 및 구성품 목록 1통
4. 10월 5일 청약철회 문의, 전자우편 및 10월 6일 접수 회신 1통
5. 반송비 영수증, 반송 운송장 및 10월 8일 배달완료 내역 1통
6. 10월 12일 검수와 전액 환급 확인 회신, 카드 취소 조회 및 계좌내역 1통

2026. 10. 19.

채권자 윤가온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